



대회 및 이벤트 규정

2026년 6월 12일 기준



목차

1. ISU 이벤트.....	3
2. 올림픽 대회.....	5
3. 국제 대회.....	6
4. 클럽 간 경기.....	10
5. 국내 대회.....	11
6. ISU 이벤트의 유치, 배정 및 공고.....	11
7. 대회의 기본 사항.....	11
8. 거주 및 시민권(국적).....	16
9. 나이 기준.....	18
10. 참가 및 엔트리.....	20
11. 비용.....	25
12. ISU 선수권대회의 타이틀 및 상.....	27
13. 상업권 및 상표.....	29
14. 오피셜.....	33
15. 결정, 이의 제기, 항소.....	40
16. 개최자의 책임.....	43
17. 의료.....	44

1. ISU 이벤트

일반

- 1.1 "ISU 이벤트"란 ISU가 "ISU 이벤트"로 특별히 지정한 모든 대회를 말한다. ISU의 스포츠 활동은 주로 "ISU 이벤트"로 지정된 국제 대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ISU 이벤트의 공식 명칭은 이사회의 배정을 공표하는 ISU 통신문, 관련 각서 또는 개최 협약(해당하는 경우), ISU 공식 상호 및 상표 가이드와 같은 특정 ISU 지침에 명시된 명칭을 말한다.

- 1.2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ISU 이벤트는 모든 ISU 선수권대회,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아래 제1.3조 참조), 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시리즈에 대하여는 아래 제1.3조 참조), ISU 피겨스케이팅 월드 팀 트로피,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예선 대회, 그리고 ISU가 직접 조직, 재정지원 및 홍보하며 "ISU"로 특별히 지정한 ISU 쇼, ISU 엑시비션 또는 그 밖의 ISU 국제 대회와 같은 그 밖의 모든 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1.3 2026/27 시즌에는 시리즈로 조직되는 각 ISU 국제 대회 시리즈(챌린저 시리즈 제외), 즉 현재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시니어 및 주니어),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시니어 및 주니어), 쇼트트랙 월드 투어(시니어) 및 쇼트트랙 월드컵(주니어)으로 구성되는 시리즈도 "ISU 이벤트"로 정의된다. 다만 국제 대회에 해당하는 개별 대회의 국내 TV 방영권 및 마케팅/광고권은, 개최 회원국과 ISU 사이의 별도 합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개최 회원국이 계속 보유한다.

2027/28 시즌부터는 각 ISU 시리즈[예: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시니어 및 주니어),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시니어 및 주니어), 쇼트트랙 월드 투어(시니어) 및 쇼트트랙 월드컵(주니어)]와 그에 연계된 각 국제 대회는 ISU 이벤트이다.

1.3.1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주니어 및 시니어)

1.3.1.1 2026/27 시즌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주니어) 시리즈 및 그 국제 대회의 참가에 관한 특별 규정(스케이팅 요구조건, 포인트 제도, 상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이사회가 제정하여야 한다. 이 특별 규정은 적용 대상 시즌의 첫 번째 예정 시리즈 대회가 열리기 최소 3개월 전에 ISU 회원국에 배포되어야 한다.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시니어) 시리즈 및 그 국제 대회의 참가에 관한 특별 규정(스케이팅 요구조건, 포인트 제도, 상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이사회가 개최 ISU 회원국과 협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1.3.1.2 2027/2028 시즌 이후

주니어 및 시니어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의 참가에 관한 특별 규정(경기 형식, 스케이팅 요구조건, 포인트 제도, 상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이사회가 제정하여야 한다. 이 특별 규정은 적용 대상 시즌의 첫 번째 예정 시리즈 대회가 열리기 최소 3개월 전에 ISU 회원국에 배포되어야 한다.

1.3.2 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및 ISU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모든 세부사항은 매 시즌 7월 1일 이전에 발행되는 종목별 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1.3.3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및 ISU 스피드스케이팅 주니어 월드컵.

모든 세부사항은 매 시즌 7월 1일 이전에 발행되는 종목별 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1.3.4 ISU 피겨스케이팅 월드 팀 트로피

ISU 피겨스케이팅 월드 팀 트로피는 ISU 회원국의 국가대표팀들이 모여 서로 겨루는 경기이다. 모든 세부사항은 각 대회 개최 최소 9개월 전에 발행되는 대회별 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1.4 ISU 대표

1.4.1 ISU 대표는 ISU 선수권대회 및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ISU 이벤트에 대하여 이사회가 임명한다. ISU 대표는 ISU 이벤트에서 제일 높은 직급의 ISU 오피셜이다.

1.4.2 ISU 대표는 해당 이벤트에서 ISU를 대표하고, ISU 규정에 정한 모든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오피셜의 관할에 특별히 속하지 않는 이벤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2. 올림픽 대회

2.1 동계올림픽대회(OWG) 및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YOG)

- 2.1.1 OWG와 YOG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독점적 자산이나, ISU가 국제 대회와 같이 관장한다.
- 2.1.2 IOC는 올림픽 헌장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사회와 협의하여 OWG와 YOG의 프로그램 및 관련 조건(IOC 자격 제도 원칙, ISU 오피셜 등급, 비용 부담 책임 등)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 2.1.3 ISU는 IOC의 후원하에 OWG와 YOG에서 ISU 스포츠 종목의 기술적 통제와 관장을 책임진다.

2.2 OWG 및 YOG에 대한 특별 규정

2.2.1 적용 규칙

OWG와 YOG의 빙상경기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올림픽 헌장과 그 시행세칙, IOC 자격 제도 원칙(IOC 규정) 및 ISU 규정과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IOC 규정과 ISU 규정 및/또는 규칙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IOC 규정이 우선한다.

2.2.2 엔트리

OWG 빙상경기의 엔트리는 해당 ISU 스포츠 종목에 적용되는 ISU 스포츠 규칙에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2.3 출전

IOC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ISU 회원국 소속 선수만이 OWG와 YOG의 빙상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2.2.4 ISU 기술대표

OWG와 YOG의 ISU 기술대표는 ISU의 최고 운영 권한자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ISU가 정한 그리고 OWG에 대한 ISU 참가와 관련하여 해당 올림픽 헌장에 정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ISU 기술대표의 여행경비, 숙박비 및 식대는 IOC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2.2.5 ISU 오피셜

OWG와 YOG의 운영을 위하여 ISU 규칙이 요구하는 모든 ISU 오피셜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OWG에서 활동하는 모든 ISU 오피셜은 "ISU" 소속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저지는 동일한 회차의 OWG 또는 YOG에서 두 종목을 초과하여 활동할 수 없다.

2.3 OWG에서의 비용

2.3.1 ISU가 부담하고 지급하는 비용

OWG의 빙상경기의 경우, ISU는 다음의 인원에 대하여 여행경비, 숙박비 및 식대를 지급한다(각 경우, IOC가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한다).

2.3.1.1 회장, 부회장, 이사회 위원, OWG 프로그램에 포함된 종목의 기술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ISU 스태프 또는 계약직원

2.3.1.2 이사회가 임명한 ISU 오피셜.

2.3.2 조직위원회가 부담하고 지급하는 비용

ISU가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오피셜의 비용은 IOC의 책임으로 하며, IOC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국제 대회

3.1 국제 대회의 정의 및 유형

3.1.1 국제 대회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회를 말한다.

3.1.1.1 개최 ISU 회원국이 다른 ISU 회원국을 2개국 이상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3.1.1.2 선수의 엔트리는 오로지 참가 ISU 회원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3.1.1.3 2개국 이상의 ISU 회원국 소속 선수가 참가한다.

3.1.1.4 대회가 ISU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3.1.2 피겨스케이팅 챌린저 시리즈(시니어)

피겨스케이팅 챌린저 시리즈는 선수들이 ISU 선수권대회 출전자격을 획득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의 역할을 한다. 그 목적은 챌린저 시리즈로 연계된 국제 대회가 적절하고 일관되게 조직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모든 세부사항은 매 시즌 7월 1일 이전에 발행되는 종목별 세부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3.1.3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챌린저 시리즈(주니어 및 시니어)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챌린저 시리즈는 팀들이 ISU 선수권대회 출전자격을 획득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의 역할을 한다. 모든 세부사항은 매 시즌 7월 1일 이전에 발행되는 종목별 세부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 3.1.4 두 개 이상의 ISU 회원국이 공동으로 조직하는 국내종합선수권대회는, 국내종합선수권대회로 공식 발표되어 참가 각 ISU 회원국별로 별도의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 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로 분류된다. 그러한 국내종합선수권대회를 제외하고, ISU 회원국이 (공동) 조직하는 경기로서 비개최 회원국 소속 선수가 2명 이상 참가하는 경기는 국제 대회로 본다.
- 3.1.5 국제 대회(시니어, 주니어, 노비스)는 모든 ISU 회원국(임시 회원국 및 정회원국)에 개방되거나, 일부 국가로 한정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 세부사항과 가이드라인은 해당 통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3.1.6 국제 마스터즈 대회 및 기타 특정 선수 집단을 위한 그 밖의 대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ISU와 협력하여 개최할 수 있다.
- 3.1.7 오픈(제3자) 국제 대회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국제 대회를 말한다.

3.1.7.1 제3자가 조직하거나, 제3자가 ISU 회원국과 공동으로 조직하는 대회

3.1.7.2 적격자와 부적격자(아래 제7.2.3조에 정의된다)가 함께 경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회, 그리고/또는

3.1.7.3 새로운 경기 형식을 포함하는 대회.

해당 대회는 반드시 ISU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1.7.4 적격 선수의 엔트리는 참가 선수가 속한 해당 ISU 회원국의 승인하에서만 할 수 있다. ISU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국가 또는 해당 부문에 ISU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가 없는 국가에서는 ISU의 권한하에 출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ISU 회원국 또는 ISU의 승인은 부당하게 유보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3.1.7.5 대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새로운 형식이 있으면 이를 따르되, ISU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승인된 새로운 형식이 있는 경우 해당 대회는 원래 적용되었을 ISU 규정 및 규칙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ISU 통신문 제2171호 또는 그 이후 적용될 수 있는 개정 통신문을 참조한다.

3.2 국제 대회에서의 ISU 규정 준수 및 새로운 형식

- 3.2.1 국제 대회를 조직하는 ISU 회원국과 그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자는 해당 대회를 관장하는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3.2.2 스포츠 규칙에 관한 기술적 성격의 수정 및 새로운 방법/시스템(이하 "새로운 형식"이라 한다)은 이사회가 관련 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국제 대회 또는 오픈 국제 대회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승인할 수 있으나, ISU 선수권대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로운 형식을 포함하는 대회에 대한 ISU 회원국의 개최 신청서는 통신문 제2171호 또는 그 이후의 개정 통신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ISU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2.3 이사회가 승인한 새로운 형식의 상세 내용은 해당 대회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새로운 형식을 포함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ISU 회원국은 대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관련 기술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ISU 회원국의 국제 대회 개최 계획을 ISU 사무국에 통지

- 3.3.1 각 ISU 회원국은 다음 시즌에 조직하고자 하는 국제 대회를 4월 1일까지 ISU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회 일정이 상충하는 경우 ISU 사무국은 관련 ISU 회원국들에 즉시 통보하여 서로 날짜를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ISU 회원국들은 4월 15일까지 조정 결과를 ISU에 통지하여야 한다.
- 3.3.2 ISU 사무국은 회원국이 통지한 대회들을 5월 1일까지 통신문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3.3.3 연간 ISU 통신문에 수록되지 않은 국제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ISU 회원국은 먼저 공식 대회 공고문을 ISU 사무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해당 대회는 ISU 사무국이 승인한 후에만 국제 대회로 공식 인정된다.

3.4 ISU 회원국 및 일반 대중에 대한 국제 대회의 공고

- 3.4.1 국제 대회의 공고는 ISU 국제 대회 캘린더에 영어로 게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정확성과 적시 게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최 ISU 회원국이 진다. 스피드스케이팅 부문의 경우 대회 첫날로부터 늦어도 4주 전까지, 피겨스케이팅 부문의 경우 늦어도 8주 전까지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고문 사본을 게재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까지 ISU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국제 대회 공고의 내용

3.4.2.1 일반 항목

국제 대회의 공고에는 다음의 일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한 내용
- b) 링크의 종류(천연 또는 인공, 실외 또는 실내)에 대한 내용
- c) 대회의 날짜와 시작 시각
- d) 엔트리 마감일
- e) 시상의 성격 및 금전인 경우, 그 금액
- f) 참가비(있는 경우)

3.4.2.2 스피드스케이팅 보충 항목

위의 일반 항목 외에도,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공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레이스의 종류에 대한 내용
- b) 트랙 및 패딩 시스템에 대한 내용

3.4.2.3 쇼트트랙 보충 항목

위의 일반 항목 외에도, 쇼트트랙 국제 대회 공고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a) 트랙, 빙면 및 빙면을 둘러싸는 방호벽 패딩의 종류에 대한 내용
- b) 선수의 최대 인원(해당하는 경우)
- c) 레이스의 종류에 대한 내용
- d) 공식 추첨 절차(해당하는 경우)
- e) 결승까지의 진행 방식

3.4.2.4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아이스댄스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보충 항목

위의 일반 항목 외에도,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아이스댄스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대회 공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빙면 크기(길이 및 폭).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저지 플랫폼의 위치와 빙면의 입구 및 출구를 표시한 링크 도면도 제공하여야 한다.
- b) 패턴 댄스, 쇼트 프로그램, 리듬 댄스, 프리 스케이팅, 프리 댄스의 기술적 세부사항(연기 시간 및 특별 조건 포함)
- c) 음악 재생 수단, 그리고 음악 및 백업 음악을 해당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하는 형식, 방법 및 일정. 허용되는 음악 형식은 CD, MP3, AAC, WAV 및 WMA이다.
- d) 첫 저지 미팅 및 라운드 테이블 협의의 예정 일자와 시각
- e)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가중치
- f) 아래 제9조에 따른 선수 나이 요건
- g) 아래 제7.2조 및 제8조에 따른 참가 자격 요건, 국적 및 이적 확인서

- h) 공식 숙소(해당하는 경우)
- i) 조직위원회의 주소와 담당자
- j) 페어 및 커플 팀당 선수의 최대 인원(합리적인 범위에서)

3.4.2.5 보충 조건

개최 ISU 회원국 또는 가맹 클럽은 ISU 규정 및/또는 규칙과 상충하지 않는 한 대회 공고에 보충적인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3.4.3 국제 대회 공고의 지연 또는 내용 부적절

대회 공고가 늦게 이루어지거나 ISU 규정 및/또는 규칙에 반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소관 부문의 부회장은 ISU 회원국 선수들이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개최 ISU 회원국에 그 의무를 상기시키는 경고를 내린다. 경고가 2회 연속으로 내려지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ISU 회원국의 국제 대회 개최 자격을 향후 최대 2년간 정지시킬 수 있다.

3.4.4 대회 일정의 연기 또는 대회 개최 철회

- 3.4.4.1 대회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엔트리 마감일도 연장하여야 한다.
- 3.4.4.2 가능한 한, 선수를 참가시키는 ISU 회원국 또는 가맹 클럽에 연기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새 엔트리 마감일 전에 엔트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4.4.3 개최 ISU 회원국 또는 가맹 클럽이 대회 공고를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8일 이내에 ISU 사무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3.4.4.4 연기 또는 철회의 통지는 개최 ISU 회원국의 책임하에 ISU 디지털 채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개최 ISU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ISU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클럽 간 경기

- 4.1 클럽 간 경기란 ISU 회원국에 소속된 일반 클럽이 조직하되 ISU 회원국 자체는 조직하지 않는 경기로서, 최소 1개 이상의 다른 ISU 회원 단체 소속 클럽에 소속된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를 말한다.
- 4.2 클럽 간 경기에는 다음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참가 ISU 회원국의 해당 규칙 및 조건만이 적용된다.
 - 4.2.1 클럽 간 경기는 조직하는 클럽의 독점적 권한하에 치러져야 하며 그 의의는 클럽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클럽 간 경기의 결과는 ISU 이벤트, OWG 및 YOG 참가를 위한 자격 기준 및/또는 최소 기술요소 총점, 세계 스탠딩/랭킹 포인트 및/또는 기준기록의 취득에 사용되지

않는다.

- 4.2.2 클럽 간 경기는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예: 마스터즈, 성인, 컵스, 칩스 등)를 위하여 조직될 수도 있다.
- 4.2.3 다만, 클럽 간 경기에 아래 제9조 및 해당 스포츠 규칙에서 정의하는 시니어, 주니어 및/또는 노비스를 위한 경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기는 적용되는 모든 ISU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치러져야 한다. 조직하는 클럽이 속한 ISU 회원국은 조직하는 클럽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4.2.4 조직하는 클럽은 클럽 간 경기가 ISU 이벤트 및 국제 대회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제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4.2.4.1 대회 공고는 해당 클럽이 속한 ISU 회원국이 아니라 해당 클럽을 대회의 주최자로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 4.2.4.2 모든 경기 자료, 특히 엔트리 리스트, 출발 순서 및 결과표에는 참가 선수의 클럽을 기재하여야 하며, ISU 회원국의 약어는 클럽 명칭 뒤의 괄호 안에 기재할 수 있다.
 - 4.2.4.3 TV 중계의 경우 ISU가 통지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국내 대회

위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정한 대회 이외의 모든 대회는 국내 대회로 보며, 각 ISU 회원국의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6. ISU 이벤트의 유치, 배정 및 공고

6.1 ISU 이벤트의 배정

피겨스케이팅 및 스피드스케이팅 ISU 이벤트의 배정은 제출된 유치 신청서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한다. 유치 및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ISU 유치 규정에 정한다.

7. 대회의 기본 사항

7.1 이벤트의 성립

경기는 3인 이상의 선수(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3개 팀)가 참가를 신청하고 그중 2인 또는 2개 팀이 출발선에 나선 경우 치러진 것으로 간주한다.

7.2 참가 자격

7.2.1 ISU의 참가 자격 규칙은 다음의 고려사항에 근거한다.

참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ISU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7.2.1.1 스케이팅의 윤리적 가치의 보호

7.2.1.2 청렴성의 유지

7.2.1.3 건강 및 안전의 보호

7.2.1.4 스케이팅 및 국제 스케이팅 경기의 적절한 운영

이러한 목적은 다음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된다.

7.2.1.5 국제 스케이팅 경기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스포츠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스케이팅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사회가 승인하는 새로운 형식의 적용을 받는다)을 보장한다.

7.2.1.6 스케이팅의 윤리적 가치 및 ISU 윤리 규정의 집행은 특히, 다음과 같다.

- a) 스케이팅을 스포츠 도박 활동 및 국제 스케이팅 경기의 조작 위험을 야기하는 그 밖의 행위로부터 보호한다.
- b) 선수에 대한 괴롭힘과 학대를 방지한다.
- c) ISU 오피셜의 청렴성과 ISU 캘린더상 대회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 d) ISU와 관련한 부패하고 비윤리적인 활동 및 행위를 금지한다.
- e)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7.2.1.7 반도핑 규칙 및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규칙의 집행

7.2.1.8 선수, ISU 오피셜 및 선수 지원 인력은 가능한 한 많은 스케이팅 경기에 참가하고 관중은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 시즌(즉,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대회 간 충돌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국제 스케이팅 캘린더의 조직

7.2.1.9 발전 및 연대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한, 스케이팅의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지원과 모든 수준에서의 스케이팅 발전에 대한 지원

ISU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대회에서만 이러한 목적을 적절히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은 국제 대회에만 배타적으로 참가하기로 선택한 개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7.2.1.10 해당 경기의 유형이 ISU 정관 제1.1조에 따라 ISU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ISU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대회

7.2.1.11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저지, 스타터, 경기 코디네이터 및 그 밖에 ISU가 승인한 오피셜을 포함하여, ISU가 인정하고 승인한 오피셜이 진행되는 대회

7.2.1.12 (이사회가 승인한 새로운 형식의 적용을 받아 원래 적용되었을 ISU 규정/규칙이 면제되는) ISU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대회

7.2.2 ISU 참가 자격 규칙의 적용 범위 제한

7.2.2.1 선수와 오피셜의 국내 대회 참가 및 비경쟁적 행사(예: 출연, 광고, 엑시비션(ISU 인정 대회에서의 엑시비션은 제외), 쇼 및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성격 또는 쇼 성격의 행사) 참가는 오로지 각 ISU 회원국의 규칙과 조건에 따른다. 그러한 규칙과 조건은 이 제7조에 따른 ISU 참가 자격 규칙의 일부가 아니다.

7.2.2.2 ISU 회원국은 또한 소속 선수가 출전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7.2.3 "부적격자(자격상실자)"의 정의

ISU 스포츠 종목 중 어느 하나에서 IS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국제 대회에 출전하거나 오피셜로 활동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이 제7조를 위반하는 자는, 이사회가 이 조항에 따라 참가 자격 상실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ISU 활동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된다.

7.2.4 적격자(자격보유자)의 참가

7.2.4.1 다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선수를 포함하여 적격자만이 ISU 이벤트, ISU 총회, OWG, YOG 및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7.2.4.2 적격자는 부적격 선수가 포함될 수 있는 엑시비션 및 쇼(레크리에이션 성격 및/또는 쇼 성격의 그 밖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참가는 참가 선수가 속한 ISU 회원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7.2.4.3 적격자는 또한 이사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초청된 부적격 선수가 포함되는 ISU 승인 오픈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7.2.4.4 나아가, 적격자는 성인 또는 장애인 선수 등 특정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그룹만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로부터 각 대회별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4.5 ISU 회원국은 적격자로서 국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선수 또는 오피셜이 부적격자가 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이를 즉시 ISU에 통지할 의무를 진다.

7.2.5 자격의 상실

7.2.5.1 자격 규칙 위반의 결과로 참가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다른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실격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의 지위는, 해당 징계 제재의 조건에 따라 그 지위가 ISU 이벤트 및 활동과 국제 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의 참가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2.5.2 이사회는 스케이팅에서 개인의 참가 자격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 자격 규칙 위반 혐의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다.

7.2.5.3 판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출된 서면 및/또는 구두 증거를 고려하여 이사회가 내린다.

- a) ISU는 해당 당사자에게, 특히 참가 자격 규칙이 보호하는 정당한 목적을 고려하여, 혐의 내용과 ISU가 참가 자격 규칙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b) 해당 당사자는 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합당한 이유가 있는 요청에 따라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에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
- c) ISU가 혐의를 유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SU는 그 대응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 d) 해당 당사자는 답변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당사자는 또한 구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 e) 구두 청문은 이사회 앞에서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활동하는 ISU 회장 및 사무총장 앞에서 진행한다.

7.2.5.4 이사회가 참가 자격 규칙이 보호하는 목적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유발한다고 판단하는 사안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를 전달할 때 임시의 부적격 조치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결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그 신속 절차에 따라 즉시 심사할 수 있다.

7.2.5.5 참가 자격 규칙 위반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제재를 부과하며, 이사회는 경고를 내리거나 정하여진 기간의 참가 자격 상실을 부과할 수 있다. 이사회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각 개별 사건의 모든 관련 정황, 특히 위반자의 과실 정도, 과거 전력 및 ISU 참가 자격 규칙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용 제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재를 결정할 때 이사회는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의 특성과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7.2.5.6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이사회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선수의 경우

- (1)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에 주최자의 행정적 오류가 없었더라면 명백히 ISU의 승인을 받았을 대회에 선수가 참가한 최초 위반에 대하여는 "과실 없음" 판정을 내린다.
- (2) 선수가 해당 대회가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으나(즉, 주최자의 행정적 오류가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 그 대회가 그 밖에는 참가 자격 규칙이 보호하는 ISU의 목적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였음을 입증한 최초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를 부과한다.
- (3)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한 대회에 최초로 참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 (4)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한 대회에 추가로(상습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최대 2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b) 오피셜의 경우

- (1)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않은 대회에 최초로 참가한 경우 등의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를 부과한다.
- (2)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한 대회에 최초로 참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 (3)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않은 대회에 추가로 참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최대 2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 (4)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한 대회에 두 번째로 참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최대 2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 (5)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한 대회에 그 이상 추가로 참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최대 15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7.2.6 자격 상실 지위의 존속 기간

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상실된 적이 있는 오피셜은, 이사회에 의하여 적격자로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이후 ISU 선수권대회, OWG, YOG 또는 국제 대회에서 레프리, 보조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저지, TPAG 또는 OAC 위원, 스타터 또는 경기 코디네이터가 될 수 없으며, 이사회 위원, 기술위원회 위원, 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ISU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7.3 자격자로서의 자격 회복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상실된 적이 있는 자는 정하여진 자격정지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면 자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7.3.1 자격 회복 신청

자격자로서의 자격 회복 신청은 이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7.3.1.1 해당 당사자 본인이 또는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여 ISU 회원국이 신청한다(그러한 요청은 부당하게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7.3.1.2 제재 건별로 동일인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7.3.1.3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ISU가 제공하는 ISU 공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7.3.2 자격 회복 신청에 대한 결정

이사회는 자격 회복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 자격 회복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기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8. 거주 및 시민권(국적)

8.1 ISU 회원국을 통한 엔트리

ISU 이벤트 및 국제 대회는 ISU 회원국의 구성원인 선수만 참가할 수 있으며, 엔트리는 해당 ISU 회원국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OWG 및 YOG 참가에 대하여는 위 제2.2.2조와 올림픽 헌장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8.2 기본 요건

8.2.1 선수는 자신이 국적(시민권)을 가진 국가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의 ISU 회원국 소속으로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국적은 관할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식 국적(시민권) 증명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1년의 거주란 해당 개인이 직전 역년 내에 거주 국가에서 180일 이상 계속 체류하였음을 뜻하며, ISU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하여야 한다. 거주 증명은 ISU 회원국이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년 재확인하여야 한다.

8.2.2 페어 스케이팅과 아이스댄스에서는 한 파트너는 대표하는 ISU 회원국이 속한 국가의 국적자여야 한다. 제8.2.1조는 다른 파트너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 파트너에게는 국적 또는 거주지 요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제8.2.1조와 제8.2.2조는 독립된 규정이며 서로 결부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 8.2.3 어느 ISU 회원국 소속으로 ISU 이벤트 및/또는 국제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선수가 장래에 다른 ISU 회원국 소속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에 대표하였던 ISU 회원국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는 부당하게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선수는 다른 ISU 회원국 소속으로 그러한 대회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때로부터 12개월의 대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해당 ISU 회원국 소속으로 국제 대회 및 ISU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8.2.4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팀

8.2.4.1 싱크로12-16

아래 표에 정한 수의 선수는 팀이 대표하는 ISU 회원국과 다른 ISU 회원국의 구성원 또는 소속원일 수 있다. 다만 그들이 속한 ISU 회원국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선수에게는 위 제8.2.1조에 정한 국적/거주 요건과 제8.2.3조에 따른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싱크로12-16	허용되는 비시민권자 수
12명 ~ 14명 팀	3
15명 또는 16명 팀	4

8.2.4.2 싱크로9

모든 선수와 후보 선수는 팀을 참가 신청하는 ISU 회원국의 구성원 또는 소속이어야 한다.

8.3 이적 확인서

자신이 국적을 가지지 않은 국가의 ISU 회원국 소속으로 참가하는 선수(위 제8.2.4조에 따른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팀 구성원은 제외한다)와, 과거 ISU 이벤트 및/또는 국제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고 장래에 다른 ISU 회원국 소속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참가하고자 하는 ISU 회원국을 통하여 ISU 사무국으로부터 이적 확인서(CC)를 취득한 후에만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ISU 통신문 제2526호 및 그 이후의 개정 통신문을 참조한다.

8.4 시즌 제한

- 8.4.1 같은 시즌(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선수는 모든 ISU 이벤트 및 국제 대회에서 하나의 ISU 회원국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이는 여러 ISU 스포츠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에게도 적용된다.

- 8.4.2 이 규정은 위 제8.2.4조에 따른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팀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8.5 요건의 면제

특별한 사정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8조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예: 난민, 무국적 또는 중립 선수의 경우) 이사회가 직접 특정 경기에 선수를 참가 신청할 수 있다. ISU가 참가 신청한 선수는 그가 국적을 가지거나 거주하는 국가의 쿼터에 산입되지 않는다.

8.6 이적 확인서 거절 권리

이사회는 이 규정상의 모든 형식과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해당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스포츠의 발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ISU 회원국이 특정 선수에 대하여 제출한 이적 확인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8.7 이적 확인서 취득 절차

이적 확인서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은 ISU 통신문 제2526호 및 그 이후의 개정 통신문에 정한다.

8.8 ISU 오피셜의 이적

위의 규정은 ISU 오피셜의 이적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가오는 시즌에 관하여 ISU 오피셜의 이적 확인서를 ISU 사무국에 제출하는 기한은 직전 시즌의 4월 15일로 한다.

9. 나이 기준

9.1 나이에 따른 선수 구분 및 경기 참가 나이 요건

9.1.1 시니어라는 용어는 이 규정과 ISU 규칙에서 최소 참가 나이 요건이 17세인 특정 ISU 경기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며, 그 나이는 각 경우 해당 경기 직전의 7월 1일 이전에 오는 선수의 생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9.1.2 어떠한 ISU 이벤트의 명칭에도 시니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9.2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의 나이 제한

9.2.1 시니어 부문 ISU 이벤트와 OWG에서는 대회 전년도 7월 1일 이전에 17세 이상이 된 선수만 출전할 자격을 가진다.

9.2.2 주니어란 대회 전년도 7월 1일 이전에 19세가 되지 않은 선수를 말한다.

9.2.3 국제 대회에서는 주니어 나이 부문에 다음의 나이 분류가 적용된다.

분류	대회가 열리는 해의 전년도 7월 1일 이전의 나이:
U-19	17 ~ 18세
U-17	15 ~ 16세
U-15	13 ~ 14세
U-13	11 ~ 12세

9.2.4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는 그 선수권대회 직전의 7월 1일 이전에 15세가 된 주니어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9.3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아이스댄스의 나이 제한

9.3.1 ISU 이벤트(시니어), 국제 대회(시니어) 및 OWG에서는 대회 전년도 7월 1일 이전에 17세 이상이 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9.3.2 ISU 이벤트(주니어)와 국제 대회(주니어)에서 주니어란 대회 전년도 7월 1일 이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한 선수를 말한다.

종목	부문	최소 나이	최대 나이	추가 규정
싱글	여자/남자	13세	19세 미만	-
페어 스케이팅	여자	13세	21세 미만	파트너 간 최대 나이 차이: 7년
	남자	13세	23세 미만	
아이스댄스	여자	13세	21세 미만	파트너 간 최대 나이 차이: 7년
	남자	13세	21세 미만	

9.3.3 국제 노비스 대회에서 노비스란 대회 직전의 7월 1일 이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한 선수를 말한다.

등급	종목	부문	나이 요건
초급 노비스	전 종목	구분 없음	14세 미만
중급 노비스	전 종목	구분 없음	16세 미만
고급 노비스	싱글	구분 없음	10세 이상 16세 미만
	페어 스케이팅 / 아이스댄스	여자	10세 이상 16세 미만
	페어 스케이팅 /	남자	10세 이상 18세 미만

	아이스댄스		
--	-------	--	--

9.4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나이 제한

- 9.4.1 국제 시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대회 및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세계 시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시니어 팀은 전원이 해당 선수권대회 또는 대회 직전의 7월 1일 이전에 17세 이상이 된 선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 9.4.2 국제 주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대회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주니어 팀은 전원이 해당 대회 직전의 7월 1일 이전에 13세 이상이 되고 19세가 되지 않은 선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 9.4.3 국제 노비스 대회에서 노비스 팀은 전원이 해당 대회 직전의 7월 1일 이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한 선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 9.4.3.1 10세 이상이 되었을 것
 - 9.4.3.2 16세가 되지 않았을 것

9.5 처벌

각 ISU 회원국은 시니어 및 주니어 국제 대회, ISU 이벤트, YOG 및 OWG에 참가 신청된 선수가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ISU 회원국은 다음 시즌에 열리는 모든 시니어 및 주니어(해당하는 경우) ISU 이벤트와 국제 대회에 선수를 파견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10. 참가 및 엔트리

10.1 참가

10.1.1 ISU 이벤트 우선 참가

10.1.1.1 선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1.1.1.1 ISU 선수권대회에서 10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고,

10.1.1.1.2 소속 ISU 회원국으로부터 다음 시즌에 경기에 출전하거나 공연하도록 선발되었으며, 그리고

10.1.1.1.3 다음 시즌에도 경기 출전 또는 공연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ISU 회원국은 ISU의 텔레비전 및 상업 계약의 대상이 되는 ISU 이벤트가 어떠한 사설 이벤트보다도 우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그러한 사설 이벤트가 이러한 우선 대상 이벤트 중 하나와 일정이 겹치는 경우).

10.1.1.2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ISU 회원국과, 의학적 사유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한 ISU 이벤트 참가를 거부하는 선수는 적용되는 규칙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10.1.2 ISU 선수권대회 참가

10.1.2.1 ISU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에는 ISU 회원국에 소속되고(예외는 위 제8.5조 참조) 해당 스포츠 규칙에 명시된 최소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선수가 참가할 수 있다.

10.1.2.2 유럽선수권대회

유럽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있는 선수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정의하는 유럽 국가의 ISU 회원국에 소속되고 해당 스포츠 규칙에 명시된 최소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제한한다.

10.1.2.3 4대륙선수권대회

4대륙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있는 선수는 비-유럽 ISU 회원국에 소속되고 비-유럽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해당 선수권대회 직전 1년 이상 유럽 이외의 지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개인으로서(예외는 위 제8.5조 및 제8.6조 참조), 해당 스포츠 규칙에 명시된 최소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제한한다.

10.2 엔트리

10.2.1 일반적인 조건

엔트리(출전신청)는 해당 ISU 회원국 또는 가맹 클럽이 제출하여야 한다(예외는 위 제8.5조 및 제8.6조 참조). 엔트리는 규칙 및/또는 해당 대회의 공고에 명시된 기한(마감일) 내에 지정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최자는 엔트리 접수 사실을 해당 ISU 회원국에 전자적 또는 서면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ISU 이벤트의 엔트리는 온라인 엔트리 및 인증 포털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2.1.1 대회 명칭

10.2.1.2 엔트리를 제출하는 ISU 회원국 또는 가맹 클럽의 명칭

10.2.1.3 선수의 이름과 성

10.2.1.4 각 선수의 생년월일

10.2.1.5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팀 명칭과 후보 선수를 포함한 전 선수의 명단(이름,

성, 국적, 생년월일)을 알파벳 순서로 기재하고, 팀 주장은 C로 표시한다.

10.2.1.6 엔트리를 제출하는 ISU 회원국 또는 가맹 클럽이 발급한 선수의 참가 자격 증명서

10.2.1.7 싱글 스케이팅, 페어 스케이팅 및 아이스댄스에서 선수는 남자, 여자, 페어 스케이팅 커플, 아이스댄스 커플이 될 수 있다.

10.2.2 엔트리 기본 사항

10.2.2.1 각 선수, 오피셜 및 ISU 회원국은 ISU 이벤트, 국제 대회 및 ISU의 활동에의 참가를 관장하는 ISU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한다는 서약서(Declaration) 양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약서 양식은 ISU 대회 및 활동의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고 이들을 구속하는 ISU 규정과 그 밖의 공식 규칙 중 특정 포괄 조항을 명시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법정 동의 연령 미만(미성년)인 선수의 경우, 서약서에는 부모 중 최소 1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공동 서명하여야 한다.

10.2.2.2 서약서 양식은 매년 해당 선수 또는 오피셜이 그 시즌에 처음 참가하는 대회의 개막 최소 2주 전까지 ISU 사무국 엔트리 시스템(entries system)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10.2.2.3 각 ISU 이벤트, 국제 대회, OWG 및 YOG에 적용되는 서약서 양식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a) 모든 선수, ISU 오피셜 및 ISU 회원국은 다음을 수락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1) ISU 징계위원회를 설립하고 스위스 로잔에 소재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ISU와 그 ISU 회원국 및 ISU 활동의 모든 참가자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중재기관으로 인정하며, 항소에 대한 일반 법원예의 제소를 일체 배제하는 정관이 적용된다는 점.

(2) ISU가 체결하는 텔레비전 및 그 밖의 미디어 관련 계약에 해당 ISU 인정 대회가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ISU 스포츠 종목의 홍보와 관련하여 현재 또는 향후 ISU가 승인하는 조건과 목적에 따라 선수의 연기와 ISU 인정 대회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촬영, 방송, 사진 촬영 및 식별될 수 있고 그 밖의 방법으로 묘사, 녹화, 녹음되며 나아가 상영 및 배포될 수 있다는 점.

(3) 피겨스케이팅 ISU 인정 대회의 경우, 선수가 연기에 사용하여 선보이는 음악과 안무에 대한 권리가 공중 사용을 위하여 개별 권리자로부터 완전히 처리되어 양도 가능한 형태로 적법하게 취득되었다는 점.

(4)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을 선언하고 동의한다:

- i. 개인정보는 ISU가 수집하며, 오로지 경기 참가의 지원, 홍보 및/또는 조직과 ISU의 목적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ISU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이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사용은 이러한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적 성명(국가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것),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이미지 및 시청각 기록.
 - ii. ISU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수생체여권(Athlete Biological Passport, ABP)과 관련된 모든 선수 개인정보를 ITA(국제검사기구) 및 해당 국가 반도핑 기구와 공유한다는 점.
 - iii. 개인정보를 ISU에 이전하고 ISU가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점. 그리고 선수 등이 경기 참가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ISU가 실시하는 보안 및 기타 신원 조회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러한 정보와 관련 민감정보(실효되지 않은 형사 유죄판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
 - iv. ISU 규약의 관련 조항 위반을 조사 및/또는 소추할 목적으로, ISU와 국가 반도핑 기구, 법 집행기관, 출입국 관리기관 등 그 밖의 필요한 제3자가 상호 간에 그리고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는 특히 WADA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수생체여권(ABP) 관련 개인정보(선수에 한한다) 및/또는 베팅(도박) 규칙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 v. ISU 인정 대회 중에 수행되는 ISU 승인 연구 프로젝트(예: 선수 약력, 설문조사, 촬영, 각종 측정, 진료 기록 등)에서 개인정보와 통계를 수집 및 사용하는 점. 그리고 ISU 인정 대회의 홍보와 ISU의 목적 증진을 위하여 그러한 데이터 및 이미지 및 관련 자료를 모든 미디어 채널(텔레비전, 라디오, 디지털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기록, 방송, 전송, 복제 및 배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
- b) 모든 피겨스케이팅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와 이들이 소속된 ISU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선수가 선택한 음악 트랙의 편집/각색과 그에 대한 안무 창작을 허락하는 유효한 리믹스/각색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보증한다.
 - (2) 이벤트(시상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 상표의 표시 및 표시 금지에 관한 아래 제13.2.1조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선언하며, ISU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SU 통신문 제2508호 또는 그 이후의 개정 통신문에 명시된 제재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c) 모든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선수와 이들이 소속된 ISU 회원국은,

(1) ISU 통신문 제2508호 또는 그 이후의 개정 통신문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선언하며, ISU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경기(시상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 상표의 표시 및 표시 금지에 관한 아래 제13.2.2조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10.2.3 ISU 선수권대회 엔트리

ISU 선수권대회의 엔트리는 적용되는 대회 및 이벤트 규정과 해당 종목의 스포츠 규칙에 정한 제한을 적용한다.

10.2.4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엔트리

국제 대회의 팀 엔트리 양식에 등재된 명단은 엔트리 마감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 후보 선수를 포함한 모든 팀 선수의 명단은 늦어도 등록 시점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10.2.5 닉네임

"닉네임" 또는 "선호 이름"의 사용은 허용되나, 반드시 선수의 이름과 성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선호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과 다를 수 있으나, 그 사용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10.2.6 포스트 엔트리

10.2.6.1 엔트리 공식 마감일에 해당 ISU 인정 대회 개최지 현지 시각 20:00(오후 8시)를 넘겨 접수된 모든 엔트리는 포스트 엔트리로 간주되며, 회장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수리되지 않는다.

10.2.6.2 포스트 엔트리는 출발 순서 추첨이 실시되기 전까지 허용될 수 있다.

10.2.6.3 포스트 엔트리에 관한 이 규정은 저지의 지명에도 적용된다.

10.2.7 상세 정보

선수권대회 엔트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스포츠 규칙을 참조한다.

10.2.8 참가비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의 ISU 선수권대회에는 참가비가 없다.

국제 대회의 경우 참가비가 책정될 수 있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에서 이러한 참가비는 팀 단위의 단일 참가비로 부과하여야 한다. 선수별 참가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11. 비용

11.1 ISU 이벤트에 관한 일반 원칙

ISU와 개최 ISU 회원국 또는 그 가맹 클럽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조건이 이 제11조의 규정에 우선한다.

아래 규정은 여행경비, 숙박비 및 식대에만 적용되며, 2027/28 시즌부터 ISU 선수권대회에 적용되며, 해당 ISU 선수권대회에 관하여 ISU와 개최 ISU 회원국 사이에 개최 협약이나 각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밖의 ISU 이벤트에 관하여는 ISU와 개최 ISU 회원국 사이에 합의된 합의서에 따라 적용 비용을 정한다.

여행경비, 숙박비 및 식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비용은, ISU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단일 ISU 이벤트 예산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개최 ISU 회원국 또는 그 가맹 클럽은 그러한 비용을 직접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개최 ISU 회원국은 호텔, 객실 배정, 요금 및 관련 준비 사항에 관한 제안서를 ISU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비용은 최종 이벤트 예산에 편입된다.

11.1.1 이벤트 예산으로 충당되는 비용. 이벤트 예산은 다음을 충당한다.

11.1.1.1 ISU 회장, 부회장(피겨스케이팅 또는 스피드스케이팅 중 해당 부문), ISU 대표, 사무총장, 해당 기술위원회 위원, 필요한 ISU 스태프 및 ISU 의료 자문관의 여행경비.

11.1.1.2 ISU가 배정한 ISU 오피셜(레프리, 보조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경기 코디네이터, 저지)의 여행경비.

11.1.1.3 위에 열거된 모든 ISU 오피셜, 이사회 위원 및 기술위원회 위원(이미 공식 직책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자는 제외한다)의 숙박비 및 식비

11.1.1.4 ISU 이벤트에서 선수 및 ISU 회원국별 팀 리더 1인의 숙박비 및 식비(자세한 사항은 해당 각서 또는 개최 협약을 참조한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이 비용은 참가 ISU 회원국이 부담한다.

11.1.1.5 해당하는 경우, 피겨스케이팅 엑시비전의 출연자 및 초청 인사의 숙박비 및 식비

11.1.2 비용 부담 기간

11.1.2.1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a) 선수: 해당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 전날 점심부터 시작하여 경기 다음 날 점심까지, 오후에 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 b) 팀 리더: 팀 리더 회의 당일 점심식사부터 경기 다음 날 점심까지, 오후에 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 전날 점심부터 시작하여 경기 다음 날 점심까지, 오후에 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 c) 직책 보유자 및 ISU 오피셜: 보장 범위는 해당 각서 또는 개최 협약(해당하는 경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1.1.2.2 피겨스케이팅(싱글 및 페어, 아이스댄스 – 주니어 및 시니어):

- a) 직책 보유자: 첫 주첨일 점심부터 마지막 시상식/연회/엑시비션 다음 날 점심까지
- b) 레프리,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저지: 첫 오피셜 미팅 전날 저녁부터 마지막 시상식/연회/엑시비션 다음 날 점심까지
- c) 테크니컬 컨트롤러 및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첫 공식연습 전날 저녁부터 마지막 시상식/연회/엑시비션 다음 날 점심까지
- d) 선수: 첫 공식연습 전날 저녁부터 다음 중 나중의 시점까지. (i) 마지막 세그먼트 (해당하는 경우 예선 라운드 또는 선수권 라운드) 다음 날 점심, (ii) 해당 엑시비션에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 그 엑시비션 다음 날 아침
- e) 팀 리더: 첫 공식연습 전날 저녁부터 다음 중 나중의 시점까지. (i) 소속 선수의 마지막 세그먼트 다음 날 점심, (ii) 해당 엑시비션에 참석하는 경우 그 엑시비션 다음 날 아침

11.1.2.3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주니어 및 시니어):

- a) 직책 보유자: 첫 주첨일 점심부터 마지막 시상식/연회/엑시비션 다음 날 점심까지
- b) 레프리 및 저지: 저지 미팅 전날 점심부터 라운드 테이블 협의 또는 폐막 연회 다음 날 아침까지
- c)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첫 공식연습 전날 저녁부터 라운드 테이블 협의 또는 폐막 연회 다음 날 아침까지
- d) 선수 및 팀 리더: 비용은 참가 ISU 회원국이 부담한다.

11.1.3 기준 및 조건

11.1.3.1 숙박은 적정 수준이어야 하며, 식사는 경기 일정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11.1.3.2 레프리, 저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TPAG 또는 OAC 위원,

스타터, 경기 코디네이터에게는 1인용 객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ISU 오피셜이 선수와 숙소를 함께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3.3 지정 호텔이 아닌 숙소를 선택한 참가자는 승인된 일비(per diem) 금액만을 지급받으며, 자신이 선택한 숙소를 개최 ISU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1.4 제한

11.1.4.1 ISU 회원국과 가맹 클럽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코노미 항공권, 필요한 여행 경비, 경기 개최지에서의 숙박 및 식사로 한정한다)을 초과하는 참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12. ISU 선수권대회의 타이틀 및 상

12.1 타이틀

각 선수권대회의 우승자는 우승한 해당 선수권대회를 반영하는 다음의 타이틀을 보유한다.

- 12.1.1 ISU ([ISU 스포츠 종목명], [세부 종목명] [해당하는 경우 부문]) 세계선수권 우승자 _
(선수권대회 개최 연도)
- 12.1.2 ISU ([ISU 스포츠 종목명], [세부 종목명] [해당하는 경우 부문]) 유럽선수권 우승자 _
(선수권대회 개최 연도)
- 12.1.3 ISU ([ISU 스포츠 종목명], [세부 종목명] [해당하는 경우 부문]) 4대륙선수권 우승자 _
(선수권대회 개최 연도)
- 12.1.4 ISU ([ISU 스포츠 종목명], [세부 종목명] [해당하는 경우 부문]) 세계 주니어 선수권 우승자 _
(선수권대회 개최 연도)

예시:

2026 ISU 스피드스케이팅 500m 남자 세계선수권 우승자

2027 ISU 스피드스케이팅 1000m 여자 유럽선수권 우승자. 2026 ISU 쇼트트랙 계주 유럽선수권 우승자

2026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세계선수권 우승자. 2026 ISU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세계선수권 우승자. 2027 ISU 피겨스케이팅 페어 세계선수권 우승자

12.2 메달

ISU가 ISU 선수권대회 메달을 제공한다.

12.2.1 수여되는 메달 수

12.2.1.1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팀 경기:

하나 이상의 예선 라운드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팀이 1위, 2위 또는 3위를 차지하면 메달을 받는다.

12.2.1.2 피겨스케이팅 팀 경기:

피겨스케이팅 팀 경기의 두 세그먼트(쇼트 프로그램 및 프리 스케이팅/아이스댄스) 중 하나 이상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팀이 1위, 2위 또는 3위를 차지하면 메달을 받는다.

12.2.2 배타성

ISU 회원국은 ISU 선수권대회 메달과 닮았거나 유사한 메달을 다른 대회에서 수여할 수 없다.

12.2.3 메달 수여

ISU 선수권대회의 메달 수여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12.2.3.1 경기가 종료되고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순위를 발표한다. 이어서 선수를 시상대 또는 시상 구역으로 3위 선수, 2위 선수, 우승자의 순서로 호명한다.

12.2.3.2 ISU 대표(및/또는 ISU 대표가 확인한 다른 인사)가 3위 및 2위 선수(팀 주장)에게 ISU 동메달과 은메달을, 우승자(팀 주장)에게 ISU 금메달을 수여한다.

12.2.3.3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ISU 대표(또는 ISU 대표가 확인한 다른 인사)가 개최 ISU 회원국과 협의하여, 대회보다 충분히 앞서 제출된 요청에 따라 스포츠계의 다른 저명 인사가 메달을 수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ISU 대표(또는 해당하는 다른 인사)는 메달리스트에게 축하 인사만 전한다.

12.2.3.4 개최 ISU 회원국의 대표도 메달 수상자(팀 주장)를 축하하고 꽃이나 그 밖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에서는 개최 ISU 회원국의 대표가 팀원과 등록된 후보 선수에게 ISU 메달을 수여한다.

12.2.3.5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정부 또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승자 소속 국가의 국가(國歌)를 연주하고, 메달 수상자 3인(동점의 경우 그 이상)의 소속 국가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ISU 회원국의 국가에 공식 약식본이 있는 경우 그 약식본을 연주할 수 있다. 필요한 국가와 국기를 제공할 의무는 개최 ISU 회원국에 있다.

12.2.3.6 피겨스케이팅에서는 ISU 대표 또는 다른 이사회 위원이 참석한 경우 그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레프리가 각 세그먼트(여자, 남자, 페어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 아이스댄스의 경우 리듬 댄스와 프리 댄스)의 종료 후 각 종목의 3위 선수, 2위 선수 및 우승자에게 각각 ISU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수여하되, 국가를 연주하거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12.2.4 메달 회수

메달을 수여받은 선수 또는 팀이 실격된 경우, 실격된 선수 또는 팀의 메달은 ISU 사무국/IOC에 반납하여야 하며, 최종 순위를 다시 산정하여 새로운 순위에 따라 메달을 다시 수여한다. 경기 중 실격이 발생한 경우 위 제12.2.3.6조에 따라 수여된 메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3. 상업권 및 상표

13.1 권리

제1.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ISU는 그 활동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며, 해당 ISU 회원국 및 그 밖의 계약 상대방의 협조를 받아 ISU 이벤트를 직접 조직할 권한이 있다. 개최 ISU 회원국과 ISU 사이의 별도 합의로 정하는 경우 일부 권리를 이양할 수 있다.

13.2 선수 및 회원국 지원 인력 – 상업권

13.2.1 장비 마킹 – 피겨스케이팅 부문

13.2.1.1 모든 ISU 이벤트 및 ISU의 관할하에 조직되는 그 밖의 모든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선수, 팀 오피셜, 코치 및 지원 인력은 자신의 신체와 의상에 자신의 이름, 소속 ISU 회원국의 명칭 및/또는 로고, ISU 회원국 국가의 공식 약어 및/또는 ISU 회원국 국가의 공식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며, 글자의 높이는 최대 15 cm 이내여야 한다.

13.2.1.2 또한 이들은 자신의 신체와 의상에 광고 마킹, 상표, 로고 또는 그 밖의 식별 표시(이하 "마킹"이라 한다)를 6개 이하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각 마킹의 크기는 최대 60 cm² 이내이고 금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키스 앤드 크라이(kiss and cry)" 구역과 TV 인터뷰 구역을 포함하여 빙판 밖에 있는 동안, 경기 전 공식 워밍업 중, 그리고 연습 세션 중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금지 분야(Prohibited Categories)"란 다음과 관련된 마킹, 상표, 로고 또는 그 밖의 식별 표시를 말한다.

(1) 담배(궐련, 시가,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을 포함한다)

(2) 주류

- (3) 스포츠 베팅, 카지노 및 온라인 도박
- (4) 총기, 탄약 및/또는 군용 장비 제조업체
- (5) 음란물 및/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성인 오락물, 그리고
- (6) 정당 및/또는 종교 단체

13.2.1.3 의상 공급업체의 마킹은 30 cm² 이하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부츠와 날에는 마킹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부츠 뒤축에 10 cm² 이하로 부츠 제조업체의 상호를 표시할 수 있고, 각 날과 각 블레이드 가드에 20 cm² 이하로 새긴 제조업체 식별 표시 1개를 넣을 수 있다.

13.2.1.4 ISU 오피셜은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착용된 상태에서 마킹을 측정할 수 있다.

13.2.1.5 경기 중, 경기 종료 시의 엑시비션 중, 그리고 시상식 중에는 선수의 의상에 최대 30 cm²의 제조업체 식별 표시 1개가 허용된다. 해당 품목에 탄성 소재(스판덱스 또는 엘라스테인이라고 하는 합성 탄성 섬유 소재)가 포함된 모든 경우, 승인된 식별 표시의 크기는 늘어난 상태(예: 선수가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또한 선수의 의상에는 선수와 그가 소속된 ISU 회원국의 이름 및/또는 로고 및/또는 ISU 회원국 공식 약어를 표시할 수 있다. 부츠와 날에는 위 제13.2.1.2조에 따른 부츠 또는 날의 제조업체 식별 표시를 표시할 수 있다.

13.2.1.6 그 밖의 빙판 밖 구역에서는 크기 제한 없이 마킹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추가 마킹은 해당 IS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2 장비 마킹 – 스피드스케이팅 부문

13.2.2.1 모든 ISU 선수권대회 및 ISU의 관할하에 조직되는 그 밖의 모든 스피드스케이팅 또는 쇼트트랙 대회에서, 동일한 국가대표팀(동일한 ISU 회원국이 참가 신청한 팀)에 소속된 팀 오피셜, 코치, 지원 인력 및 선수는 공식연습 세션을 포함하여 선수권대회 또는 대회의 전 기간 동안 경기장 또는 빙상 트랙 구역 내에서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유니폼은 팀의 소속 국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쇼트트랙 월드 투어의 경우 ISU가, 그 밖의 모든 대회의 경우 ISU 회원국이 정한 디자인을 따라야 한다. ISU 회원국은 팀 유니폼(스킨 수트, 워업 재킷과 지퍼 바지, 포디움 재킷, 팀 요원 재킷을 포함한다)의 디자인을 ISU 사무국에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다.

13.2.2.2 팀 오피셜, 코치, 지원 인력 및 선수는 자신의 의상과 기술 장비에 자신의 이름, 소속 ISU 회원국의 명칭 및/또는 로고 및/또는 ISU 회원국 국가의 공식 약어(아래 제13.2.2.2조 k) 참조)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경기 구역, TV 인터뷰 구역 및 시상식 중에 자신의 신체와 의상에 금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 마킹, 상표, 로고

또는 그 밖의 식별 표시(이하 "마킹"이라 한다)를 다음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a) 아래 표는 레이싱 수트와 워업복(재킷 및 지퍼 바지), 안전 장비 및 팀 유니폼에 표시하는 모든 마킹(제조업체 상표를 포함한다)의 허용 총 최대 크기와 마킹당 최대 개수 및 크기를 나타낸다. 레이싱 수트는 상체 1피스(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모자를 포함한다)와 하체 1피스의 2개 피스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마킹 위치	마킹당 최대 크기	총 최대 크기
상체(허리 위, 팔 포함)	80 cm ²	750 cm ² 제한 없음
하체(허리 아래 부분)	250 cm ²	

- b) ISU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와 ISU 쇼트트랙 대회에서 헬멧 양 측면의 두 곳은 선수 번호 표시용으로 지정되어 있다.
- c) ISU 이벤트에서 헬멧의 앞부분은 ISU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다. 각 시즌마다 ISU 회원국은 일정 기간 동안 회원국 자신의 마킹을 위해 헬멧 앞부분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ISU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즌 중 언제든지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여 ISU는 스폰서가 있는 이벤트 또는 기간에 대한 앞부분의 해제를 취소한다.
- d) 암밴드와 헬멧 커버는 ISU의 독점적 영역이다. 개최 ISU 회원국은 암밴드에 마킹을 표시하기 위하여 ISU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 e) 아래에서 기술하는 제조업체의 상표만이 스케이트/부츠, 안경, 장갑, 정강이 보호대, 헤드기어, 목 및 발목 보호대, 블레이드 가드와 같은 기술 장비에 허용된다. 스케이트는 부츠 2개, 날 2개, 날과 부츠를 연결하는 기구 2개로 총 6개 피스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제조업체 상표는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
- f) 아래 표는 허용되는 최대 크기와 제조업체 상표의 개수를 정한다. 제조업체 상표를 다른 마킹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마킹과 결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항목	총 최대 크기	마킹당 최대 크기	마킹 개수
스케이트			
부츠 1켤레	40 cm ²	20 cm ²	2개 (부츠 1개당 1개)
날 1쌍	40 cm ²	20 cm ²	2개(부츠 1개당 1개)
연결 기구 1쌍	12 cm ²	6 cm ²	각인 2개(연결 기구 1개당 1개)
스포츠 및 기술 장비			
헤드기어	16 cm ²	8 cm ²	2
안경	16 cm ²	8 cm ²	2
장갑 1켤레	16 cm ²	8 cm ²	2개(장갑 1개당 1개)
목 보호대	20 cm ²	20 cm ²	1
발목 보호대	20 cm ²	20 cm ²	1

블레이드 가드	20 cm ²	20 cm ²	1
---------	--------------------	--------------------	---

- g) 상표 대신 선수 본인의 이름을 어느 장비에나 표시(인쇄, 각인, 자수 등)할 수 있으며, 크기 제한은 상표와 같다.
- h) 일반적으로 헬멧에는 제조업체 상표를 최대 2개(제조업체 상표당 최대 20 cm²)까지 표시할 수 있다. 암밴드와 헬멧 커버에는 제조업체 상표를 표시할 수 없다.
- i) 동일한 국가대표팀의 선수, 팀 오피셜, 코치 및 지원 인력의 의상에 대한 디자인과 마킹(상업적 이미지나 등록 상표는 제외한다)을 결정하는 것은 이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해당 ISU 회원국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ISU 회원국이 선수와 인력에게 그러한 마킹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j) ISU 오피셜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착용된 상태에서 마킹을 측정할 수 있다.
- k) 선수의 레이싱 수트와 워업복에는 소속 국가명 또는 그 공식 ISU 약어를 표시하여야 한다(글자 높이는 최소 5 cm, 최대 15 cm).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국가명 또는 약어를 상체 뒷면에 표시한다. 쇼트트랙에서는 국가 약어를 양쪽 종아리 바깥쪽에 표시하며, 글자 높이는 7 cm 이상이어야 하고 무릎에서 발목 방향으로 세로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 제13.2.1.2조에 열거된 "금지 분야"가 적용된다.

- 13.2.2.3 이사회는 ISU 회원국과 선수의 권리를 축소하지 않는 한, 위 규정에서 벗어나 더 많은 마킹 및 식별 표시 또는 다른 마킹 및 식별 표시를 허용할 권한이 있다.

14. 오피셜

14.1 오피셜 평가위원회, 테크니컬 패널 자문 그룹, 오피셜 선발위원회

14.1.1 오피셜 평가위원회

오피셜 평가위원회(OAC)는 피겨스케이팅 부회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임명한다. OAC는 서로 다른 국적을 대표하는 현직 또는 전직 ISU 레프리, ISU 테크니컬 컨트롤러, ISU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및 ISU 저지의 풀로 구성한다. OAC 위원은 동시에 기술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OAC의 직무 규정(Terms of Reference)에서 정한다. OAC는 다음 사항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는다.

- i) 이사회가 확정한 수학적 기준을 포함한 사전 결정 기준에 따라 확인된, 저지 점수에 나타난 명백한 이상 및 자국 편향 의심 사례, 그리고
- ii) 테크니컬 패널이 내린 결정.

이 규칙의 목적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국 편향"이란 해당 경기에서 패널의 평균 채점에서 벗어나는 심사로 나타나는, 국적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선수를 편애하는 것을 말한다.

14.1.2 테크니컬 패널 자문 그룹

테크니컬 패널 자문 그룹(TPAG)은 피겨스케이팅 부회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임명한다. TPAG는 테크니컬 패널로 활동하고 다른 오피셜에게 교육 또는 피드백을 제공한 폭넓은 경험을 가진 인원의 풀로 구성하며, 세부 종목별로 편성한다. 각 ISU 이벤트, OWG, YOG 및 선정된 국제 대회에 대하여 해당 기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가 TPAG 소속 테크니컬 패널 자문위원을 임명한다. 테크니컬 패널 자문위원의 역할은 여러 경기에 걸쳐 ISU 규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테크니컬 패널 위원의 양성을 지원하며, 테크니컬 패널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높이고, 테크니컬 패널 내부의 팀워크, 소통 및 전문성을 함양하며, 기술 판정 기준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ISU 위원회에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동료 자문위원과의 정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테크니컬 패널의 평가와 수행에 있어 전 세계적 일관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TPAG의 직무 규정에서 정한다.

14.1.3 오피셜 선발위원회

오피셜 선발위원회(OSC)는 특히 ISU 이벤트에 임명될 ISU 저지의 선발을 결정한다. 오피셜 선발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통신문에서 정한다.

14.2 ISU 오피셜 등급

14.2.1 피겨스케이팅 부문

ISU 오피셜은 다음과 같이 두 등급으로 분류된다.

14.2.1.1 ISU 저지, ISU 레프리, ISU 테크니컬 컨트롤러(TC), ISU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TS), ISU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DRO)

14.2.1.2 국제 저지, 국제 레프리, 국제 테크니컬 컨트롤러(TC), 국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TS), 국제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DRO).

"ISU" 또는 "국제" 자격에 따라 ISU 오피셜은 아래 표에 따른 대회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가진다.

	저지	레프리	TC, TS	DRO
동계올림픽대회	ISU	ISU	ISU	ISU
동계올림픽대회 예선 대회	ISU	ISU	ISU	ISU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ISU	ISU	ISU	ISU
ISU 선수권대회	ISU	ISU	ISU	ISU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	ISU	ISU	ISU	ISU
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ISU	ISU	ISU	ISU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대회	국제*	ISU	ISU	ISU
피겨스케이팅 챌린저 시리즈	국제	국제	ISU 2명 및 국제 1명	국제
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국제	국제	ISU	ISU
국제 대회(피겨스케이팅 챌린저 시리즈 제외)	국제	국제	국제	국제

* 2026/27 시즌의 경우 본 항목은 '국제(Intern)' 등급으로 해석하며, 2027/28 시즌부터는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ISU' 등급으로 적용(해석)한다.

14.2.2 스피드스케이팅 부문

ISU 오피셜은 다음과 같이 두 등급으로 분류된다.

14.2.2.1 ISU 레프리 및 보조 레프리(AR), ISU 스타터, ISU 경기 코디네이터(CC)

14.2.2.2 국제 레프리 및 보조 레프리(AR), 국제 스타터, 국제 경기 코디네이터(CC).

"ISU" 또는 "국제" 자격에 따라 ISU 오피셜은 아래 표에 따른 대회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가진다.

	레프리	스타터	CC	AR
동계올림픽대회	ISU	ISU	ISU	ISU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ISU	ISU	ISU	ISU
ISU 선수권대회	ISU	ISU	ISU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ISU	ISU	ISU	ISU / 국제
쇼트트랙 월드 투어	ISU	ISU	ISU	ISU / 국제
스피드스케이팅 주니어 월드컵	ISU / 국제	ISU / 국제	ISU / 국제	ISU / 국제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ISU	ISU / 국제	ISU / 국제	ISU / 국제
국제 대회	국제	국제	국제	국제

14.3 임명에 관한 일반 원칙

14.3.1 ISU와 회원국은 ISU가 제시한 역량 기반 추천을 고려하여 ISU 규정(스포츠 규칙 및 해당 ISU 통신문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ISU 오피셜을 임명한다. 이는 다음에 적용된다.

14.3.1.1 제14.4조(스피드스케이팅 부문) 및 제14.5조(피겨스케이팅 부문)에 명시된 ISU 이벤트, 그리고

14.3.1.2 OWG 및 YOG. 이 경우 ISU가 ISU 오피셜을 임명한다.

14.4 오피셜의 임명 – 스피드스케이팅 부문

14.4.1 ISU는 모든 ISU 이벤트의 모든 ISU 오피셜을 임명한다.

14.4.2 회원국은 모든 국제 대회의 ISU 오피셜을 임명한다.

14.5 오피셜의 임명 – 피겨스케이팅 부문

2026/27 시즌:

14.5.1 ISU 선수권대회,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주니어 및 시니어) 및 월드 팀 트로피의 경우, ISU는 다음을 임명한다.

14.5.1.1 레프리

14.5.1.2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14.5.1.3 테크니컬 컨트롤러

14.5.1.4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14.5.1.5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시니어)의 저지.

14.5.2 회원국은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시니어)를 제외한 모든 ISU 이벤트의 저지와 모든 국제 대회에 모든 ISU 오피셜을 임명한다.

2027/28 시즌:

14.5.3 ISU 선수권대회,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주니어 및 시니어) 및 월드 팀 트로피의 경우, ISU는 다음을 임명한다.

14.5.3.1 레프리

14.5.3.2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14.5.3.3 테크니컬 컨트롤러

14.5.3.4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14.5.3.5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및 시니어)와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준결승 및 파이널(주니어 및 시니어)의 저지.

14.5.4 회원국은 제14.5.3.5조에 열거된 대회를 제외한 모든 ISU 이벤트의 저지와 국제 대회에 모든 ISU 오피셜을 임명한다.

2028/29 시즌부터:

14.5.5 ISU는 모든 ISU 이벤트의 모든 ISU 오피셜을 임명한다.

14.5.6 회원국은 모든 국제 대회에 모든 ISU 오피셜을 임명한다.

14.6 임명된 ISU 오피셜에 적용되는 제한

14.6.1 모든 ISU 오피셜은 적격자(자격보유자)여야 한다.

14.6.2 아이스 쇼 또는 스케이팅 엑시비션 투어의 소유 또는 운영으로 보수를 받는 자는 ISU 이벤트, OWG, YOG 또는 모든 국제 대회에서 레프리, 보조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경기 코디네이터, 저지, OAC 또는 TPAG 위원, 스타터로 활동하여서는 안 된다.

14.6.3 ISU 회원국 및 그 가맹 클럽의 유급 직원과 코치는 ISU 이벤트 또는 국제 대회에서 레프리, 보조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저지, TPAG 또는 OAC 위원, 스타터, 경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유급 직원이란 해당 계약 관계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ISU 회원국 또는 가맹 클럽을 위하여 주당 평균 25시간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14.6.4 부적격 선수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로 활동할 수 있다.

- 14.6.5 이사회, 선거위원회,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위원, ISU 스태프(자문위원을 포함한다), 발전위원회 위원은 위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명시된 대회에서 레프리, 저지,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컬 컨트롤러, TPAG 또는 OAC 위원, 스타터, 경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여서는 안 된다. 기술위원회 위원은 국제 대회(개별 챌린저 시리즈 대회는 제외한다)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4.6.6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저지, 스타터 및 경기 코디네이터는 성인 및 마스터즈 대회를 제외한 각 종목의 ISU 이벤트와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14.6.7 ISU 기구에 선출된 모든 위원이 선출 또는 임명 시점에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저지, 스타터 또는 경기 코디네이터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ISU 종목별 해당 스포츠 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임기 전 기간 동안 해당 명부에 계속 등재된다. 임기가 만료된 후 그러한 자는 명부에 계속 등재되기 위하여 12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4.6.8 테크니컬 컨트롤러는,
- 14.6.8.1 동일한 ISU 이벤트, OWG 및/또는 YOG에서 다른 종목의 레프리 및/또는 저지로 활동하여서는 안 되고,
 - 14.6.8.2 동일한 ISU 이벤트에서 다른 종목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여서는 안 되며,
 - 14.6.8.3 ISU 회원국의 풀타임 직원이어서는 안 된다.
- 14.6.9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는,
- 14.6.9.1 같은 시즌의 ISU 이벤트, OWG 및/또는 YOG에서 다른 종목의 레프리 및/또는 저지로 활동하여서는 안 되고,
 - 14.6.9.2 동일한 대회에서 다른 종목의 테크니컬 컨트롤러로 활동하여서는 안 되며,
 - 14.6.9.3 ISU 회원국의 풀타임 직원이어서는 안 된다.
- 14.6.10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레프리, 저지,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는 풀타임 스포츠 저널리스트 또는 풀타임 TV 해설가가 될 수 없다.
- 14.6.11 레프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ISU 선수권대회의 레프리는 동일한 선수권대회의 다른 종목에서 저지로 활동하여서는 안 된다.
- 14.6.12 개인적, 상업적 및 가족 관계
- 14.6.12.1 "이해충돌"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ISU 윤리 규정은 ISU 윤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된 ISU 오피셜과 그 밖의 참가자에게 적용된다.

14.6.12.2 윤리 규정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고가 될 만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ISU 이벤트, OWG 또는 YOG에서 선출직 또는 임명직 직책 보유자는 어떠한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도 활동하여서는 안 되며, 따라서 어떠한 ISU 회원국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참가 신청되거나 인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 ISU 기술위원회에 소속된 코치는 예외로서, ISU 이벤트 또는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자신의 개별 지도 선수를 계속 지도할 수 있다.
- b) 피겨스케이팅 부문에 한하여, ISU 오피셜(레프리, 저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등)은 자신이 ISU 오피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ISU 이벤트, OWG 또는 YOG에서는 국가대표팀의 일원, 팀 리더, 팀 리더 보조, 샤프롱, 팀 주치의 또는 팀 코치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ISU 오피셜은 ISU 피겨스케이팅(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아이스댄스) 선수권대회 또는 OWG에서 레프리, 저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TPAG 또는 OAC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같은 시즌에는 ISU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아이스댄스), OWG 또는 YOG에서 팀 리더(또는 팀 리더 보조)로 활동하여서는 안 된다.
- c) ISU 이벤트, OWG 또는 YOG에서 출전 선수의 가족은 해당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의 오피셜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로 보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ISU 이벤트, OWG 또는 YOG의 다른 경기에서는 활동할 수 있다.
- d) ISU 이벤트, OWG 또는 YOG에서 부적격자의 가족 또는 코치의 가족은 그 부적격자나 코치가 지도하는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의 오피셜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로 보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ISU 이벤트, OWG 또는 YOG의 다른 경기에서는 활동할 수 있다.
- e) 이 규정에서 "가족"이란 그 관계로 인하여 출전 선수, 부적격자 또는 코치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f) 대회의 오피셜 배치와 관련하여, 배정된 ISU 오피셜에 대한 이해충돌이나 ISU 윤리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대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레프리가 결정한다.

14.7 ISU 오피셜의 지명

모든 ISU 회원국은 매년 4월 15일 이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저지,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및 경기 코디네이터의 성명과 관련 연락처를 ISU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4.7.1 ISU 웹사이트에 게재된 직전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저지,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및 경기 코디네이터로 지명된 자.

14.7.2 ISU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저지,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및 경기 코디네이터로 처음 지명된 자로서, 해당 종목별(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로 요구되는 필수 시험의 응시자로 지명된 자.

14.7.3 ISU 및 국제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저지,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경기 코디네이터의 직전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ISU 회원국이 인지한 사실로 인하여(예: 나이 제한, 본인의 사임, 사망, ISU 회원국이 부과한 제재 등) 해당 ISU 명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자.

지명된 모든 자는 해당 스포츠 규칙에 명시된 각 직위별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4.8 ISU 오피셜에 관한 통신문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저지,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의 명단과,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의 레프리, 스타터, 경기 코디네이터의 명단을 각각 알파벳순으로 작성한 두 건의 별도 통신문을 매년 8월 1일까지 발송한다.

14.9 오피셜의 행동규범

14.9.1 대회 오피셜에 대한 팀 오피셜의 행동규범

팀 오피셜은 대회를 관장하는 오피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9.2 ISU 오피셜 및 기타 관계자의 행동규범

ISU 통신문으로 공표된 ISU 명부에 등재된 오피셜은 ISU 오피셜(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저지,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경기 코디네이터) 및 관련 인력(결과 서비스 제공자, 계시원 등)에 관한 부적절하거나 규정에 어긋난 행위 또는 제안을 알게 되거나 대회 현장에 있는 동안 그러한 활동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세부 내용을 레프리에게 보고하고, 현장에 ISU 대표가 있으면 ISU 대표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에 ISU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제일 높은 직급의 직책 보유자, 즉 회장, 부회장, 이사회 위원, 사무총장, 해당 종목의 TC 위원장 및 TC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들이 아직 대회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ISU 사무국의 ISU 스포츠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고는 대회가 끝나기 전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시간 제약으로 적시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한 뒤 가능한 한 빨리 현장에서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14.9.3 유니폼 및 장비

ISU 오피셜은 ISU 이벤트나 활동 또는 국제 대회에서 ISU 오피셜로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ISU 이벤트, 활동 또는 국제 대회의 기간 동안, 즉 해당 대회 또는 활동이 열리는 도시나 지역에 도착한 때부터 그 도시나 지역을 떠날 때까지 국가대표팀 엠블럼이나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다.

14.9.4 제13.2조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용한다.

14.10 ISU 회원국(개최자)의 지급

위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열거된 모든 대회의 선수, 레프리, 보조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저지,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또는 경기 코디네이터와, ISU 활동 또는 국제 대회의 준비나 참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기술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및 고문 또는 기타 자격으로 ISU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는 해당 ISU 회원국 또는 ISU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한 지급이 ISU 회원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지급 금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ISU에 통지하여야 한다.

15. 결정, 이의 제기, 항소

15.1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직권 시정

15.1.1 이의 제기 권리

규칙 위반 혐의에 근거한 이의 제기는 이 규칙 또는 그 밖의 규칙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제기할 수 있다. 레프리가 모든 이의 제기에 대하여 결정한다. 이의 제기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레프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1.2 이의 제기를 제기할 수 있는 자

이의 제기는 다음의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15.1.2.1 선수(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팀 주장) 또는 해당 경기에 인증된 팀 리더

15.1.2.2 그러한 선수 또는 팀 리더의 승인을 받아, 코치(스피드스케이팅에 한한다), 경기를 조직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선수를 참가시킨 ISU 회원국이나 가맹 클럽의 공식 대표

15.1.3 이의 제기 기한

15.1.3.1 선수의 출전에 관한 이의 제기는 해당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해당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되, 결과 발표와 시상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한다.

15.1.3.2 ISU 오피셜의 패널 구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패널 발표 후 30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5.1.3.3 아래 제15.1.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이의 제기는 레프리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한 종목 또는 예선 라운드나 파이널의 마지막 레이스가 끝난 후 15분, 쇼트트랙에서는 해당 예선 라운드나 파이널의 마지막 레이스가 끝난 후 15분,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는 각 세그먼트(쇼트 프로그램/프리 스케이팅/패턴 댄스/리듬 댄스/프리 댄스)가 끝난 후 3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5.1.3.4 부정확한 수학적 계산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경기가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아래 제15.1.4.1조 c)도 참조). 레프리를 경기장이나 숙소에서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 이의 제기서는 ISU 사무국에 이메일로 보내며 ISU 사무국이 이를 해당 레프리에게 전달한다.

15.1.4 이의 제기의 제한

'경기장 판정(field of play decisions)'은 시정이나 재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스포츠 원칙에 따라, 선수가 경기의 세그먼트, 레이스 또는 예선 라운드에서 얻은 점수 또는 기록은 관할 오피셜의 결정이 공식 아나운서에 의하여 발표되거나 경기의 점수판 또는 비디오 화면에 표시된 때에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아래에 정한 규정에 따라 제기되어 인용된 이의 제기의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의 제기에 관하여 다음의 제한이 적용된다.

15.1.4.1 피겨스케이팅

- a) 레프리, 저지 및 테크니컬 패널(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이 선수의 연기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b)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부정확한 수학적 계산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요소 또는 레벨을 잘못 판정한 것은 점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결과를 낳더라도 부정확한 수학적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c) 오류의 시정을 위한 레프리의 권한.

위 규칙에 대한 예외로서, 레프리는 이의 제기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다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오류를 시정하여야 한다.

- (1)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에(시상식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의 공식 발표 전에) 데이터 오퍼레이터의 데이터 입력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다만 테크니컬 컨트롤러와 두 명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가 모두 입력 오류가 있었다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쇼트 프로그램/리듬 댄스의 메달 수여는 시상식으로 본다.

- (2) 시상식 후 24시간 이내에 부정확한 수학적 계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다만 테크니컬 컨트롤러와 두 명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가 모두 그러한 계산 오류가 있었다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정으로 최종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메달 및/또는 상을 그에 따라 다시 배분하여야 한다.

- d) 위 제15.1.4.1조 a)~c)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레프리는 간략한 기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a)~b)의 경우에는 테크니컬 패널의 모든 위원이 그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15.1.4.2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해당 스포츠 규칙에 포함된 경기 규칙 위반을 이유로 레프리 또는 스타터가 실격 판정을 하거나 실격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잘못된 수학적 계산을 포함하여) 잘못된 데이터 처리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15.1.5 레프리의 결정

- 15.1.5.1 레프리는 모든 이의 제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레프리는 먼저 자신의 결정을 구두로 통지하고, 이후 이의 제기를 제기한 자에게 서면 결정을 전달하거나 그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이의 제기와 레프리 결정의 사본은 ISU 사무국에 전송하여야 한다.

- 15.1.5.2 이의 제기가 다음과 같이 제기된 경우,

- a) 기한을 넘겨 제기된 경우, 또는
- b)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기된 경우

레프리는 이의 제기의 실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고, 적용 규칙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그 이의 제기를 각하하여야 한다.

- 15.1.5.3 위 제15.1.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레프리는 자신의 결정 사유를 간략히 밝혀야 한다.

- 15.1.5.4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에서 레프리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재량으로 비디오 리플레이 시스템이나 그 밖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TV 피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위 제15.1.4.2조에 따라 배제되는 이의 제기 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5.1.5.5 이의 제기에 대한 레프리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아래 제15.2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없다.

15.1.5.6 레프리는 자신의 재량으로 제기된 이의 제기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공표는 가능하면 해당 경기가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의 목적상 "경기"란 하나의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한, 몇 개의 세그먼트, 레이스 또는 예선 라운드(히트, 8강, 세미파이널, 파이널)로 구성되든 하나의 경기를 말한다. 그러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개인으로 출전할 수도 있고 팀의 일원으로 출전할 수도 있다. (피겨스케이팅 부문: ISU 이벤트 또는 그 밖의 빙상 대회에서 열리는,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한 종목의 경기. 스피드스케이팅 부문: 스피드스케이팅에서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레이스로 구성된 특정 거리 또는 일련의 거리에 대한 한 종목의 경기(팀 이벤트의 경우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예선 라운드 또는 히트), 쇼트트랙의 경우 예선 라운드 등)

15.2 항소

15.2.1 항소 권리

이사회에 대한 항소는 선수의 참가 자격, 잘못된 데이터 처리(결과의 잘못된 계산을 포함한다) 또는 ISU 오피셜 패널의 구성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사항에 관한 ISU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15.2.2 기한

레프리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ISU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3 집행정지 효력 없음

항소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15.2.4 항소를 할 수 있는 자

항소는 이의 제기를 제기할 수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위 제15.1.2조 참조).

16. 개최자의 책임

개최자는 배정 통지서(allotment letter) 및/또는 개최자와 ISU 간의 기타 계약 조건에 따른 책임에 더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6.1 보안

개최 ISU 회원국은 해당 ISU 이벤트 개최에 관한 각 계약에 포함된 바에 따라 및/또는 별도의 ISU 통신문에 공표된 바에 따라 보안에 관한 ISU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16.2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ISU 회원국의 책임

모든 ISU 회원국은 자국 선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진다. 선수가 의학적 사유로 기권하는 경우, 팀 주치의 또는 대회 담당 의사가 작성한 서면 통지를 경기 전에 레프리와 의료 자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팀 주치의 또는 대회 담당 의사가 레프리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

16.3 반도핑

ISU 이벤트 및 국제 대회의 개최자는 ISU 반도핑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6.4 상금

모든 ISU 이벤트에서 ISU 회원국/개최자는 ISU의 비용으로 이사회가 정한 금액의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7. 의료

17.1 선수 건강

ISU 이벤트 또는 국제 대회에 적격 선수를 참가시키는 ISU 회원국은 엔트리를 제출할 때 해당 선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7.2 의료증명서

17.2.1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기권하는 경우, ISU 규정, 통신문 또는 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의료증명서를 ISU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2 증명서는 의사의 레터헤드 용지에 발행하거나, 경기 중 기권의 경우에는 ISU 기권 통지 양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선수와 의사가 정식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증명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수가 소속된 ISU 회원국의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서명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7.3 의료보험

17.3.1 참가 ISU 회원국의 의무

ISU 이벤트, OWG, YOG 및 위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정의된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각 ISU 회원국은 자국의 선수, 오피셜 및 소속 팀의 그 밖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의료보험과 상해보험을 제공할 전적인 의무를 진다. 그 보험은 완전한 의료 조치와 함께,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를 항공편이나 그 밖의 신속한 수단으로 본국에 이송하는 것까지 보장하여야 한다. 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지 결정하는 것은 각 ISU 회원국의 내부적인 사안이다.

17.3.2 ISU의 책임 배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ISU는 위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정한 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인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7.4 경기장 내 의료서비스

17.4.1 개최자는 대회의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ISU가 발행한 상세 가이드라인과 각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7.4.2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서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의사와 충분한 수의 응급 구조 인력으로 구성된 훈련된 응급의료팀이 예정된 모든 연습과 경기 동안 각 경기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선수의 처치를 위하여 구급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착 시간이 5분을 넘는 경우에는 구급차가 현장에 대기하여야 한다.

17.4.3 쇼트트랙 대회에서는 응급의료 인력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의사가 링크 사이드에 대기하여야 하며, 예정된 모든 연습 세션과 경기 동안 구급차가 현장에 대기하여야 한다.

17.4.4 각 호텔의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단시간(10~15분) 내에 호출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17.5 의료실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선수의 처치를 위하여 의료실은 빙면 가까이에 두어야 하며 구급 요원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실 및/또는 구급차·구급 요원은 심혈관 허탈, 호흡부전, 열상(경증 및 중증), 사지, 척추, 두부 외상을 처치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7.6 의료 책임관

의료 책임관은 경기 중 선수를 진료할 수 있도록 클리닉, 병원 및 해당 분야 전문의와의 연락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책임을 진다.

17.7 응급의료 서비스

개최자는 경기와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7.8 특정 의료 보조 기구의 승인

금속이나 단단한 플라스틱이 들어간 의료 보조 기구는 경기 전에 의료 자문관/대회 담당 의사와 레프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